

#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내 A40BL

■ 공급대상 : 전용면적 74㎡, 84㎡ 공공분양주택 870세대

-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건본주택 내 분양상담 전화(1855-0870),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 등을 통해 기본적인 청약자격에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단축근무가 시행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청약신청 및 증빙서류 발급, 입금 불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사전관람 예약자, 당첨자(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체결시)에 한하여 건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관람 및 공급계약체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날짜 및 시간대별 예약이 가능하나 특정일자(시간)의 쓸림현상 방지를 위해 일자별 접수가능 건수가 제한되고,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사전예약 신청인 외 1인, 총 2명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건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건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03**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620**이며, 공고문은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홈페이지(<http://yj-thehue.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방관람의 경우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사이버 건본주택(<http://yj-thehu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이 주택은 청약과열지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 공급)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 50% 순으로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계속하여 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주택건설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4)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 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 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बैं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 ③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대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본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국민주택(전용 85㎡이하주택))이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 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6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기준일(~로부터) | 기간  | 관련 법령             |
|--------|-----------|-----|-------------------|
| 재당첨 제한 | 당첨자 발표일   | 10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 6년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 거주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 3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 분양권 전매제한 부기등기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로서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거주무 부기등기 및 거주실태조사

- 본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상기 거주무기간(이하 "거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거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무자가 거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고 표기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중구)은 「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해당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해당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해당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br>(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 예비입주자<br>서류접수                 | 당첨자 계약체결                      |
|----|---|----------------|----------------|----------------------------------|--|-------------------------------|-------------------------------|
| 일정 | 2021.09.13.(월)  | 2021.09.14.(화) | 2021.09.15.(수) | 2021.09.24.(금)                   | 2021.09.25.(토) ~<br>10.03.(일)  | 2021.10.05.(화) ~<br>10.13.(수) | 2021.11.16.(화) ~<br>11.20.(토) |
| 방법 | 인터넷 청약<br>(08:00~17:30)   |                |                | 개별조회<br>(청약 Home 로그인 후<br>조회 가능) | 건본주택 내방 접수<br>(10:00~16:00)  |                               |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li> <li>※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건본주택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br/>(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li> </ul> |                               |                               |
| 비고 |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http://yj-thehue.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에 한 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함(코로나로 인하여 은행간 영업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각 해당 은행에 영업시간 확인 후 방문)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건본주택

-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대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위임 신고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남)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20년 9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0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b>10년간</b>  |
| - <b>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b>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하늘도시 A40블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또는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 공급,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코로나19 확산 방지,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네이바인증서,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 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을 동일 세대로 봄에 주의)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재당첨 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 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부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 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I.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1. 공급규모

-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A40BL : 공공분양주택 지하1층~지상22층 12개 동 전용면적 85㎡ 이하 870세대 (**일반공급 148세대, 특별공급 722세대**)

### 2. 공급대상

| 블록        | 주택 관리번호    | 통합 주택형    | 주택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          |           |         |          | 세대별 대지지분 (㎡) | 공급세대수     |    |       |       |      |         |       | 최고 층수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
|-----------|------------|-----------|---------|-------------|---------|----------|-----------|---------|----------|--------------|-----------|----|-------|-------|------|---------|-------|-------|---------------|----------|-------|--|
|           |            |           |         | 공급면적        |         |          | 그 밖의 공용면적 |         |          |              | 계약 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      |         |       |       |               |          | 일반 공급 |  |
|           |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소계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다자 녀     |              |           |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 모 | 국가 유공 자 | 기관 추천 |       |               |          |       |  |
| 합 계       |            |           |         |             |         |          |           |         |          |              | 870       | 83 | 257   | 215   | 40   | 40      | 87    | 148   | 22            | 50       |       |  |
| A40BL     | 2021000620 | 074.7500A | 74A     | 74.7500     | 22.7684 | 97.5184  | 5.6613    | 37.5844 | 140.7641 | 65.7100      | 232       | 23 | 69    | 58    | 11   | 11      | 24    | 36    | 21            | 14       |       |  |
|           |            | 074.8400B | 74B     | 74.8400     | 22.7958 | 97.6358  | 5.6681    | 37.6297 | 140.9336 | 65.7892      | 41        | 4  | 12    | 10    | 2    | 2       | 4     | 7     | 21            | 2        |       |  |
|           |            | 074.9800C | 74C     | 74.9800     | 22.8384 | 97.8184  | 5.6787    | 37.7000 | 141.1971 | 65.9122      | 15        | 1  | 4     | 3     | -    | -       | 1     | 6     | 15            | 1        |       |  |
|           |            | 084.9700A | 84A     | 84.9700     | 25.8813 | 110.8513 | 6.4353    | 42.7230 | 160.0096 | 74.6941      | 306       | 30 | 91    | 76    | 15   | 14      | 31    | 49    | 19            | 18       |       |  |
|           |            | 084.8900B | 84B     | 84.8900     | 25.8570 | 110.7470 | 6.4292    | 42.6828 | 159.8590 | 74.6238      | 59        | 5  | 17    | 14    | 2    | 2       | 5     | 14    | 22            | 3        |       |  |
|           |            | 084.7600C | 84C     | 84.7600     | 25.8174 | 110.5774 | 6.4194    | 42.6175 | 159.6143 | 74.5095      | 128       | 12 | 38    | 32    | 6    | 7       | 14    | 19    | 22            | 7        |       |  |
|           |            |           | 84C1    |             |         |          |           |         |          |              |           |    |       |       |      |         |       |       |               |          |       |  |
| 084.9400D | 84D        | 84.9400   | 25.8722 | 110.8122    | 6.4330  | 42.7080  | 159.9532  | 74.6677 | 89       | 8            | 26        | 22 | 4     | 4     | 8    | 17      | 22    | 5     |               |          |       |  |

### ■ 주택형 표시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 (청약시 주택형) | 074.7500A | 074.8400B | 074.9800C | 084.9700A | 084.8900B | 084.7600C | 084.9400D |
|------------------------|-----------|-----------|-----------|-----------|-----------|-----------|-----------|
| 주택 타입                  | 74A       | 74B       | 74C       | 84A       | 84B       | 84C, 84C1 | 84D       |

※ 본 사업지는 신청(청약)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주택형을 통합하였으므로, 동일 주택형 내 해당 타입의 구조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이형타입 전시관 또는 분양 안내물(홈페이지, 팸플릿 등)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 민간사업자 「한신공영(주), 우미건설(주), 이수건설(주), (주)우석건설」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 영종하늘도시 A40BL, 공동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신공영(주), 우미건설(주), 이수건설(주), (주)우석건설, 시공 : 한신공영(주), 우미건설(주), 이수건설(주), (주)우석건설]
- ※ 본 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한신공영(주) 컨소시엄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분양 및 하자 등의 업무는 한신공영(주) 컨소시엄의 업무입니다.
- ※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과 주택타입은 사업승인 도서상과 표현방법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공급금액

[단위 : 원]

| 통합주택형     | 주택타입 | 동호<br>(라인별)   | 층      | 세대수 | 주택가격        | 계약금<br>(10%) | 중도금          |              |              |              |              |              | 잔금(30%)      |            |            |            |
|-----------|------|---|--------|-----|-------------|--------------|--------------|--------------|--------------|--------------|--------------|--------------|--------------|------------|------------|------------|
|           |      |   |        |     |             |              | 1회차<br>(10%) | 2회차<br>(10%) | 3회차<br>(10%) | 4회차<br>(10%) | 5회차<br>(10%) | 6회차<br>(10%) | 용자금<br>제외 금액 | 주택도시기금     |            |            |
|           |      |   |        |     |             |              | 계약시          | 2022.03.15   | 2022.06.15   | 2022.10.17   | 2023.02.15   | 2023.06.15   | 2023.10.16   | 입주시        |            |            |
| 074.7500A | 74A  | 101동 1,3,4호<br>102동 1,2호<br>105동 5,6호<br>108동 1~4호<br>109동 1,3,4호 | 1~5층   | 68  | 320,800,000 | 32,080,000   | 32,080,000   | 32,080,000   | 32,080,000   | 32,080,000   | 32,080,000   | 32,080,000   | 32,080,000   | 21,240,000 | 75,000,000 |            |
|           |      |   | 6~10층  | 70  | 324,10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32,410,000 | 22,230,000 | 75,000,000 |
|           |      |   | 11~15층 | 68  | 327,40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32,740,000 | 23,220,000 | 75,000,000 |
|           |      |   | 16~21층 | 26  | 332,300,000 | 33,230,000   | 33,230,000   | 33,230,000   | 33,230,000   | 33,230,000   | 33,230,000   | 33,230,000   | 33,230,000   | 33,230,000 | 24,690,000 | 75,000,000 |
| 074.8400B | 74B  | 109동 2,5호   | 1~5층   | 10  | 318,000,000 | 31,800,000   | 31,800,000   | 31,800,000   | 31,800,000   | 31,800,000   | 31,800,000   | 31,800,000   | 31,800,000   | 20,400,000 | 75,000,000 |            |
|           |      |   | 6~10층  | 10  | 321,200,000 | 32,120,000   | 32,120,000   | 32,120,000   | 32,120,000   | 32,120,000   | 32,120,000   | 32,120,000   | 32,120,000   | 32,120,000 | 21,360,000 | 75,000,000 |
|           |      |   | 11~15층 | 10  | 324,500,000 | 32,450,000   | 32,450,000   | 32,450,000   | 32,450,000   | 32,450,000   | 32,450,000   | 32,450,000   | 32,450,000   | 32,450,000 | 22,350,000 | 75,000,000 |
|           |      |   | 16~21층 | 11  | 329,400,000 | 32,940,000   | 32,940,000   | 32,940,000   | 32,940,000   | 32,940,000   | 32,940,000   | 32,940,000   | 32,940,000   | 32,940,000 | 23,820,000 | 75,000,000 |
| 074.9800C | 74C  | 101동 2호   | 1~5층   | 5   | 321,800,000 | 32,180,000   | 32,180,000   | 32,180,000   | 32,180,000   | 32,180,000   | 32,180,000   | 32,180,000   | 32,180,000   | 21,540,000 | 75,000,000 |            |
|           |      |   | 6~10층  | 5   | 325,100,000 | 32,510,000   | 32,510,000   | 32,510,000   | 32,510,000   | 32,510,000   | 32,510,000   | 32,510,000   | 32,510,000   | 22,530,000 | 75,000,000 |            |
|           |      |   | 11~15층 | 5   | 328,400,000 | 32,840,000   | 32,840,000   | 32,840,000   | 32,840,000   | 32,840,000   | 32,840,000   | 32,840,000   | 32,840,000   | 23,520,000 | 75,000,000 |            |
| 084.9700A | 84A  | 102동 3,5호<br>103~104동<br>1,2,4호<br>105동 2,4호<br>106~107동 1~4호     | 1~5층   | 86  | 364,700,000 | 36,470,000   | 36,470,000   | 36,470,000   | 36,470,000   | 36,470,000   | 36,470,000   | 36,470,000   | 36,470,000   | 34,410,000 | 75,000,000 |            |
|           |      |   | 6~10층  | 90  | 368,400,000 | 36,840,000   | 36,840,000   | 36,840,000   | 36,840,000   | 36,840,000   | 36,840,000   | 36,840,000   | 36,840,000   | 36,840,000 | 35,520,000 | 75,000,000 |
|           |      |   | 11~15층 | 90  | 372,200,000 | 37,220,000   | 37,220,000   | 37,220,000   | 37,220,000   | 37,220,000   | 37,220,000   | 37,220,000   | 37,220,000   | 37,220,000 | 36,660,000 | 75,000,000 |
|           |      |   | 16~19층 | 40  | 377,700,000 | 37,770,000   | 37,770,000   | 37,770,000   | 37,770,000   | 37,770,000   | 37,770,000   | 37,770,000   | 37,770,000   | 37,770,000 | 38,310,000 | 75,000,000 |
| 084.8900B | 84B  | 110~112동 3호   | 1~5층   | 13  | 364,400,000 | 36,440,000   | 36,440,000   | 36,440,000   | 36,440,000   | 36,440,000   | 36,440,000   | 36,440,000   | 36,440,000   | 34,320,000 | 75,000,000 |            |
|           |      |   | 6~10층  | 15  | 368,100,000 | 36,810,000   | 36,810,000   | 36,810,000   | 36,810,000   | 36,810,000   | 36,810,000   | 36,810,000   | 36,810,000   | 36,810,000 | 35,430,000 | 75,000,000 |
|           |      |   | 11~15층 | 15  | 371,800,000 | 37,180,000   | 37,180,000   | 37,180,000   | 37,180,000   | 37,180,000   | 37,180,000   | 37,180,000   | 37,180,000   | 37,180,000 | 36,540,000 | 75,000,000 |
|           |      |   | 16~22층 | 16  | 377,40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37,740,000 | 38,220,000 | 75,000,000 |
| 084.7600C | 84C  | 102동 4호<br>103~105동 3호<br>110~112동 2호                             | 1~5층   | 27  | 360,100,000 | 36,010,000   | 36,010,000   | 36,010,000   | 36,010,000   | 36,010,000   | 36,010,000   | 36,010,000   | 36,010,000   | 33,030,000 | 75,000,000 |            |
|           |      |   | 6~10층  | 29  | 363,80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4,140,000 | 75,000,000 |
|           |      |   | 11~15층 | 29  | 367,50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5,250,000 | 75,000,000 |
|           |      |   | 16~22층 | 23  | 373,10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6,930,000 | 75,000,000 |

|           |      |   |        |    |             |            |            |            |            |            |            |            |            |            |            |            |
|-----------|------|---|--------|----|-------------|------------|------------|------------|------------|------------|------------|------------|------------|------------|------------|------------|
|           | 84C1 | 103동 103호<br>103동 203호<br>103동 303호<br>103동 603호<br>103동 703호<br>103동 1003호<br>103동 1103호<br>103동 1403호<br>103동 1503호                             | 1~5층   | 6  | 360,100,000 | 36,010,000 | 36,010,000 | 36,010,000 | 36,010,000 | 36,010,000 | 36,010,000 | 36,010,000 | 33,030,000 | 75,000,000 |            |            |
|           |      | 104동 103호<br>104동 203호<br>104동 303호<br>104동 603호<br>104동 703호<br>104동 1003호<br>104동 1103호<br>104동 1403호<br>104동 1503호                             | 6~10층  | 6  | 363,80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6,380,000 | 34,140,000 | 75,000,000 |            |
|           |      | 104동 103호<br>104동 203호<br>104동 303호<br>104동 603호<br>104동 703호<br>104동 1003호<br>104동 1103호<br>104동 1403호<br>104동 1503호<br>104동 1803호<br>104동 1903호 | 11~15층 | 6  | 367,50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6,750,000 | 35,250,000 | 75,000,000 |            |
|           |      |   | 16~19층 | 2  | 373,10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6,930,000 | 75,000,000 |            |
| 084.9400D | 84D  | 102동 6호<br>105동 1호<br>110~112동 1호   | 1~5층   | 20 | 360,900,000 | 36,090,000 | 36,090,000 | 36,090,000 | 36,090,000 | 36,090,000 | 36,090,000 | 36,090,000 | 36,090,000 | 33,270,000 | 75,000,000 |            |
|           |      |   | 6~10층  | 25 | 364,600,000 | 36,460,000 | 36,460,000 | 36,460,000 | 36,460,000 | 36,460,000 | 36,460,000 | 36,460,000 | 36,460,000 | 36,460,000 | 34,380,000 | 75,000,000 |
|           |      |   | 11~15층 | 25 | 368,300,000 | 36,830,000 | 36,830,000 | 36,830,000 | 36,830,000 | 36,830,000 | 36,830,000 | 36,830,000 | 36,830,000 | 36,830,000 | 35,490,000 | 75,000,000 |
|           |      |   | 16~22층 | 19 | 373,900,000 | 37,390,000 | 37,390,000 | 37,390,000 | 37,390,000 | 37,390,000 | 37,390,000 | 37,390,000 | 37,390,000 | 37,390,000 | 37,170,000 | 75,0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타입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도시자금 안내

- 본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자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외의 범위 내에서 대한(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자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한일(실제 주택도시자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국민은행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 계약 대상호실 동·호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및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세대별 지정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 외 다른계좌로의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이후 적격심사 완료자에 한하여 세대별로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 가상계좌의 예금주(당첨자의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가상계좌 예금주 : 101-1001)

#### 4. 추가선택품목

##### ▣ 발코니확장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포함]

| 통합주택형     | 주택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계약 시      | 입주 시      |
| 074.7500A | 74A       | 9,730,000  | 973,000   | 8,757,000 |
| 074.8400B | 74B       | 9,440,000  | 944,000   | 8,496,000 |
| 074.9800C | 74C       | 9,140,000  | 914,000   | 8,226,000 |
| 084.9700A | 84A       | 10,120,000 | 1,012,000 | 9,108,000 |
| 084.8900B | 84B       | 9,140,000  | 914,000   | 8,226,000 |
| 084.7600C | 84C, 84C1 | 9,520,000  | 952,000   | 8,568,000 |
| 084.9400D | 84D       | 10,670,000 | 1,067,000 | 9,603,000 |

#####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구분  | 납부금액      | 납부시기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
| 계약금 | 공급금액의 10% | 계약 시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 국민은행 | 계약 대상호실 동·호 |
| 잔금  | 공급금액의 90% | 입주 시 |                  |      |             |

※ 추가선택품목 및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 외 다른계좌로의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이후 적격심사 완료자에 한하여 세대별로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 가상계좌의 예금주(당첨자의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가상계좌 예금주 : 101-1001)

#####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품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돌,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 발코니 출입, 층고 하향 조정, 발코니 실사용면적 축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인 경우 결로방지를 위하여 결로방지단열재가 설치될 예정으로 모델하우스에 표현된 발코니보다 실사용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또한, 결로방지단열재의 마감재 종류에 따라 바탕면에 세로줄 무늬가 보일 수 있으며 이음 부위는 이음재가 돌출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일부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유상옵션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 창호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 내부창호  | 외부창호   | 기타                           |
|-------|----------|---|--|------------------------------|
| 기 본 형 |          | 22mm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 PL창<br>(내부 로이복층유리 + 외부 로이복층유리) | 창호없음   | 침실2/침실3/거실(일부) 창호는 발코니 출입 불가 |
| 확 장 형 | 안방       | 22mm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 PL창<br>(내부 로이복층유리 + 외부 일반복층유리) | 22mm 로이복층유리 단창 PL창                             |                              |
|       | 거실, 침실 등 | -   | 22mm 로이복층유리 이중창 PL창<br>(내부 로이복층유리 + 외부 로이복층유리) |                              |
|       | 발코니      | -   | 22mm 로이복층유리 단창 PL창                             |                              |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료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선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면분할창호의 하부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며 안전유리 제조과정에서 만곡(굴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 주택타입      | 옵션 선택 | 에어컨 설치 적용실                 | 실내기 수량 | 시스템 에어컨<br>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74A       | 선택①   | 거실+침실1                     | 2      | 3,300,000       | 330,000  | 2,970,000 | LG전자 |
|           | 선택②   | 거실+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 3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 선택③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4      | 5,830,000       | 583,000  | 5,247,000 |      |
| 74B       | 선택①   | 거실+침실1                     | 2      | 3,300,000       | 330,000  | 2,970,000 |      |
|           | 선택②   | 거실+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 3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 선택③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4      | 5,830,000       | 583,000  | 5,247,000 |      |
| 74C       | 선택①   | 거실+침실1                     | 2      | 3,300,000       | 330,000  | 2,970,000 |      |
|           | 선택②   | 거실+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 3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 선택③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4      | 5,830,000       | 583,000  | 5,247,000 |      |
| 84A       | 선택①   | 거실+주방+침실1                  | 3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 선택②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 4      | 5,830,000       | 583,000  | 5,247,000 |      |
|           | 선택③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5      | 6,600,000       | 660,000  | 5,940,000 |      |
|           | 선택④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 6      | 7,800,000       | 780,000  | 7,020,000 |      |
| 84B       | 선택①   | 거실+주방+침실1                  | 3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 선택②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 4      | 5,830,000       | 583,000  | 5,247,000 |      |
|           | 선택③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5      | 6,600,000       | 660,000  | 5,940,000 |      |
| 84C, 84C1 | 선택①   | 거실+주방+침실1                  | 3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 선택②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 4      | 5,830,000       | 583,000  | 5,247,000 |      |
|           | 선택③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5      | 6,600,000       | 660,000  | 5,940,000 |      |
|           | 선택④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 6      | 7,800,000       | 780,000  | 7,020,000 |      |
| 84D       | 선택①   | 거실+주방+침실1                  | 3      | 4,400,000       | 440,000  | 3,960,000 |      |
|           | 선택②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3 통합)    | 4      | 5,830,000       | 583,000  | 5,247,000 |      |
|           | 선택③   |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5      | 6,600,000       | 660,000  | 5,940,000 |      |

■ 시스템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택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및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플러스 유상옵션(선택품목)

[단위 : 원, VAT포함]

| 주택타입      | 구분            | 품목                       | 제품 사양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전타입<br>공통 | 주방가전          | 오브제컬렉션(LG전자)             | BC1L1AA1(냉장),<br>BC1F1AA(냉동),<br>BC1K1AA1(김치냉장)<br>※ 키큰장 포함 | 4,800,000 | 480,000  | 4,320,000 |
|           |               | 빌트인 전기오븐(삼성전자)           | HSB-N361B   | 440,000   | 44,000   | 396,000   |
|           |               |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전자)          | DW60T7065SS   | 900,000   | 90,000   | 810,000   |
|           | 하이브리드 쿡탑(린나이) | RBE-IRM300AB             | 640,000   | 64,000    | 576,000  |           |
|           | 중문            | 현관중문                     | 제작품   | 1,100,000 | 110,000  | 990,000   |
| 74A       | 주방특화          | 와이드 주방(빅아일랜드+상부장식장)      | 제작품   | 400,000   | 40,000   | 360,000   |
|           |               |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IG910임페리얼그레이(롯데캐미칼)   | 2,900,000 | 290,000  | 2,610,000 |
|           | 우물천정 간접조명     |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 제작품   | 400,000   | 40,000   | 360,000   |
|           | 거실/주방 바닥      | 거실/주방 바닥타일               |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 1,300,000 | 130,000  | 1,170,000 |
| 74B       | 주방특화          |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IG910임페리얼그레이(롯데캐미칼)   | 3,000,000 | 300,000  | 2,700,000 |
|           | 우물천정 간접조명     |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 제작품   | 400,000   | 40,000   | 360,000   |
|           | 거실/주방 바닥      | 거실/주방 바닥타일               |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 1,300,000 | 130,000  | 1,170,000 |
| 74C       | 주방특화          |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IG910임페리얼그레이(롯데캐미칼)   | 2,800,000 | 280,000  | 2,520,000 |
|           | 우물천정 간접조명     |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 제작품   | 400,000   | 40,000   | 360,000   |
|           | 거실/주방 바닥      | 거실/주방 바닥타일               |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 1,300,000 | 130,000  | 1,170,000 |
| 84A       | 주방특화          | 와이드 주방(주방팬트리AL도어/선반+장식장) | 제작품   | 2,200,000 | 220,000  | 1,980,000 |

|          |           |                        |                     |           |         |           |
|----------|-----------|------------------------|---------------------|-----------|---------|-----------|
|          |           |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GG950골드캐년그레이(롯데캐미칼) | 3,000,000 | 300,000 | 2,700,000 |
|          | 우물천정 간접조명 |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 제작품                 | 500,000   | 50,000  | 450,000   |
|          | 거실/주방 바닥  | 거실/주방 바닥타일             |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 1,600,000 | 160,000 | 1,440,000 |
| 84B      | 주방특화      | 와이드 주방(주방장식장+현관 팬트리확대) | 제작품                 | 900,000   | 90,000  | 810,000   |
|          |           | 주방팬트리(AL도어+시스템선반)      | 제작품                 | 800,000   | 80,000  | 720,000   |
|          |           |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GG950골드캐년그레이(롯데캐미칼) | 3,100,000 | 310,000 | 2,790,000 |
|          | 우물천정 간접조명 |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 제작품                 | 500,000   | 50,000  | 450,000   |
|          | 거실/주방 바닥  | 거실/주방 바닥타일             |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 1,600,000 | 160,000 | 1,440,000 |
| 84C,84C1 | 안방 알파룸    | 안방 알파룸(AL도어+벽체)        | 제작품                 | 400,000   | 40,000  | 360,000   |
|          | 주방특화      |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GG950골드캐년그레이(롯데캐미칼) | 3,000,000 | 300,000 | 2,700,000 |
|          | 우물천정 간접조명 |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 제작품                 | 500,000   | 50,000  | 450,000   |
|          | 거실/주방 바닥  | 거실/주방 바닥타일             |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 1,300,000 | 130,000 | 1,170,000 |
| 84D      | 복도 알파룸    | 복도 알파룸 팬트리             | 제작품                 | 600,000   | 60,000  | 540,000   |
|          | 주방특화      |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 GG950골드캐년그레이(롯데캐미칼) | 3,100,000 | 310,000 | 2,790,000 |
|          | 우물천정 간접조명 | 거실 우물천정+간접조명           | 제작품                 | 500,000   | 50,000  | 450,000   |
|          | 거실/주방 바닥  | 거실/주방 바닥타일             | 포세린 타일 600*600(수입산) | 1,600,000 | 160,000 | 1,440,000 |

■ 플러스 유상옵션품목 유의사항

(1) 공통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타일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위치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양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및 인테리어 마감은 기준층 천정고 2,300mm를 기준으로 시공되어 1층 세대 천정고인 2,500mm와 200mm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 형태 및 높이가 서로 상이함

(2) 주방가전 선택 시 유의사항

- 오브제 컬렉션 컨버터블 패키지(냉동/냉장/김치-이하 오브제 컨버터블)와 4단 다기능 서랍은 일괄 계약 품목으로 분리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미선택시에는 계약자분이 개별로 일반 냉장과 김치 냉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일반장이 시공되고 4단 다기능 서랍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장의 형태와 규격 및 마감 기준은 타입별 상이하오며 개별로 설치하시는 냉장과 김치 냉장고 일부 기준은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계약전 사이즈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브제 컨버터블 옵션 선택시 제품 특성상 가구면과 수직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냉동/냉장/김치 가전간 틈이 벌어지거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브제 컨버터블 도어 색상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색상외 변경 선택이 불가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냉동/냉장/김치 배열과 손잡이 위치 등도 변경 선택이 불가합니다.
- 오브제 컨버터블 선택시 가전기기 뒤 공간이 발생하며, 공간의 바닥 및 벽체에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하이브리드 쿨탑 미선택시 가스쿨탑 3구가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 전기오븐 유상옵션 미선택시 하부 수납장으로 설치됩니다.

(3) 인테리어 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현관중문(유상옵선품목)은 본 공사 시 문짝과 벽 사이에 일정간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관문 여닫을시 닫는 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와이드주방 유상옵선택시 주방의 형태 및 구조가 변경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우물천정 간접조명 선택 유무에 따라 우물천정 깊이 및 크기는 달라지며, 조명 색상은 건본주택에 시공된 색상외 타 색상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84B 주방팬트리 옵션 선택시 알파룸 도어는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며, 미선택시 일반 슬라이딩 목도어로 설치됩니다.
- 알파룸 또는 팬트리 AL 슬라이딩 도어(유상옵선품목)는 문짝과 벽 사이에 일정간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선택시 천정 몰딩 및 문선과 벽지 마감 등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주방 바닥 타일 미선택시 일반 강마루가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4) 주방 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벽 옵션 선택시 주방 상부장 일부 디자인(뒷선반 없음 등) 및 색상(84타입)이 변경되오니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벽 선택시 주방 상부장 일부는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되며, 후드장 주변 천정으로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됨.
- 주방 상판+벽 인테리어(유상옵선택) 선택시 사각 싱크볼이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시 일반형 싱크볼이 설치됩니다.
- 주방 상판+벽 인테리어(유상옵선택) 선택시 설치되는 사각 싱크볼 배수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벽 인테리어(유상옵선택) 선택시 상부장 일부 플랩장 디자인 변경 및 상부장 조명이 설치되며, 미선택시 일반장 및 조명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벽 인테리어(유상옵선택) 선택시 상부 플랩장 내부 조명으로 인하여 도어사이로 빛이 비춰지는 현상이 있으며 이것은 하자가 아닌 내부 디자인 고급화 적용으로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 74B타입, 84B타입 주방 상판+벽 인테리어(유상옵선택) 선택시 후드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후드 및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와이드 주방 옵션 및 엔지니어드스톤 유상옵선택시 적용되는 가구 조명의 스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벽 인테리어(유상옵선택) 미선택시 상판은 일반 인조대리석(MMA급)으로, 벽은 도기질 타일로 시공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및 벽체(유상옵선품목)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접합에 의한 라인이 발생합니다.
- 주방장식장 유상옵선택은 마감사양과 형태, 제공여부 및 규격이 각 타입별로 상이하며 미선택시 주변 가구 및 아일랜드장과 배치와 마감 기준이 달라지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플러스 유상옵선택 금액 납부방법 안내

| 구분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
|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 국민은행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 계약 대상호실 동·호 |

- ※ 추가선택품목 및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해당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 외 다른계좌로의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이후 적격심사 완료자에 한하여 세대별로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금 시 가상계좌의 예금주(당첨자의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가상계좌 예금주 : 101-1001)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택) 공통 유의사항

-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공사의 착수시점 이후 불가함.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선택이며,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선택 불가함.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정형에어컨은 모델하우스용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실제 공사시 냉방전용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 및 분양 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분양 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
| 문    | 목재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br>ABS문(문틀 및 문짝, 도어레버, 경첩, 문선)  | 발코니 내부 PL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
| 바닥   | 바닥재(마루, 현관바닥 및 디딤판 인조석), 걸레받이,<br>발코니 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벽    | 벽지, 타일,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복도 수납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br>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 선반 포함), 반침장 등 가구일체, 재료분리대(욕실포함)         |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
| 천장   | 천장지(벽지류), 반자동롤(몰딩),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 도장, 전동빨래건조대  |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
| 욕실   |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수전 등), 샤워부스,<br>욕실 약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 배수구 커버, 욕실 환풍기, 욕실 스피커폰 |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
| 주방가구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약세서리 포함), 팬트리장(도어 및 시스템선반 포함), 벽타일,<br>설비수전류, 가스쿡탑, 렌지후드 등 가전기기 일체                      | 소방검사 관련 자동식소화기, 주방 배기덕트           |
| 조명기구 | 부착, 매립, 거치형 조명기구(간접조명 포함), 욕실 매입등  | 배선기구류(스위치, 콘센트)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 주택타입 | 74A        | 74B        | 74C        | 84A        | 84B        | 84C, 84C1  | 84D        |
|------|------------|------------|------------|------------|------------|------------|------------|
| 금액   | 25,243,000 | 25,561,000 | 25,115,000 | 28,512,000 | 28,685,000 | 28,595,000 | 28,629,000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 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할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 (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 단,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앞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앞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앞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앞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 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납입이나 입주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 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1.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영종하늘도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 지역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2020.9.29.)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 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 기준일                       | 지역 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입주자 모집공고일<br>(2021.09.03)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br>(인천광역시)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 우선 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올림 하여 처리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않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경우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부 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 공급기준



| 기준일                       | 지역 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입주자 모집공고일<br>(2021.09.03)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br>(인천광역시)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공고일 현재 위 우선공급 기간에 해당하는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 시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않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경우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부 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2021.09.24)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5조)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주택으로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자산보유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 할 예정입니다.

####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건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   |        |             |    |                    |               |      |                                  |    |                 |     |                 |
|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li>•「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   |        |             |    |                    |               |      |                                  |    |                 |     |                 |

####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4. 소득 기준

####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 소득 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 원]

| 공급유형                       |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                   | 120% 이하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생애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 70%)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 일반공급(상위소득, 30%)   |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 ~ 7,839,208 | 7,094,206 ~ 9,222,467 | 7,094,206 ~ 9,222,467 | 7,393,648 ~ 9,611,741  | 7,778,024 ~ 10,111,430 | 8,162,400 ~ 10,611,119 |
| 신혼부부<br>우선공급<br>(기준소득,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030,161 ~ 7,236,192 | 7,094,206 ~ 8,513,046 | 7,094,206 ~ 8,513,046 | 7,393,648 ~ 8,872,376  | 7,778,024 ~ 9,333,628  | 8,162,400 ~ 9,794,879  |
| 신혼부부<br>일반공급<br>(상위소득,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 ~ 7,839,208 | 7,094,206 ~ 9,222,467 | 7,094,206 ~ 9,222,467 | 7,393,648 ~ 9,611,741  | 7,778,024 ~ 10,111,430 | 8,162,400 ~ 10,611,119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40% 이하 | 7,236,193 ~ 8,442,224 | 8,513,047 ~ 9,931,887 | 8,513,047 ~ 9,931,887 | 8,872,377 ~ 10,351,106 | 9,333,629 ~ 10,889,232 | 9,797,880 ~ 11,427,359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됩니다.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
|---------------|---|
|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br>※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 수에서 포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 수에서 포함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구 분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
| <b>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b> |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br>※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br>※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br>- 공급신청자의 <b>직계존속</b>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b>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b>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b>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b> |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구 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반영순위<br>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br>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br>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br>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br>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br>-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br>-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국세청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         |  |   |
|------|---------|--|---|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포함)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 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추천대상자   | 해당기관   | 입주자저축 구비 여부  |
|---|--|--|
| 국가유공자 등<br>장애인<br>철거민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br>장애인복지과(인천,서울,경기)<br>인천시청 건축계획과   | 필요 없음  |
| 장기복무 제대군인<br>10년이상 복무군인<br>의사상자 등<br>북한이탈주민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br>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br>인천시 복지국 복지정책과<br>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  |
| 다문화가족 구성원<br>우수선수<br>우수기능인<br>중소기업 근로자<br>공무원 | 인천시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과<br>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br>한국산업인력공단(인천지역본부) 국제기능경기부<br>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성장지원팀<br>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주택사업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br>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  |

###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1.09.13)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당첨자 선정방법

-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 기준일                       | 지역 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입주자 모집공고일<br>(2021.09.03)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br>(인천광역시) | 50%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
|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해당 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항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 기준          |    | 비 고   |
|------------------------|------|----------------|----|---|
|                        |      | 기 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br>(1)         | 40   | 5명 이상          | 40 |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4명             | 35 |   |
|                        |      |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br>(2)         | 15   |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br>(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br>기 간<br>(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br>거주 기간<br>(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br>*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 저축<br>가입 기간<br>(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9,333,628 | 9,794,879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됩니다.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항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양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단위: 원]

| 공급유형 |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br>(기준소득, 70%)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 일반공급<br>(상위소득, 30%) |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 ~<br>7,839,208 | 7,094,206 ~<br>9,222,467 | 7,094,206 ~<br>9,222,467 | 7,393,648 ~<br>9,611,741 | 7,778,024 ~<br>10,111,430 | 8,162,400 ~<br>10,611,119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각 공급유형별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1.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 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태아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등을 통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단,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단위: 원]

| 공급유형                       |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부부<br>우선공급<br>(기준소득,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030,161 ~<br>7,236,192 | 7,094,206 ~<br>8,513,046 | 7,094,206 ~<br>8,513,046 | 7,393,648 ~<br>8,872,376  | 7,778,024 ~<br>9,333,628  | 8,162,400 ~<br>9,794,879  |
| 신혼부부<br>일반공급<br>(상위소득,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 ~<br>7,839,208 | 7,094,206 ~<br>9,222,467 | 7,094,206 ~<br>9,222,467 | 7,393,648 ~<br>9,611,741  | 7,778,024 ~<br>10,111,430 | 8,162,400 ~<br>10,611,119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40% 이하 | 7,236,193 ~<br>8,442,224 | 8,513,047 ~<br>9,931,887 | 8,513,047 ~<br>9,931,887 | 8,872,377 ~<br>10,351,106 | 9,333,629 ~<br>10,889,232 | 9,797,880 ~<br>11,427,359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자산 및 소득 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
|------------|--|
| <b>1순위</b>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b>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b><br>※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br>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b>한부모 가족</b> |
| <b>2순위</b> | ① <b>예비신혼부부</b><br>② <b>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b>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70%)의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일순위, 동일지역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 일반공급 대상자(30%)의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분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임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 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 항 목 |                             | 기 준  | 비 고   |
|-----|-----------------------------|--|---|
| 가   |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   |
| 나   | 자녀의 수                       | 3명 이상 : 3점<br>2명 : 2점<br>1명 : 1점   |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
| 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br>연속 거주기간(인천광역시) | 3년 이상 : 3점<br>1년 이상 3년 미만 : 2점<br>1년 미만 : 1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br>※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
| 라   | 주택청약종합저축<br>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br>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br>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 마   | 혼인 기간<br>(신혼부부에 한함)         | 3년 이하 : 3점<br>3년 초과 5년 이하 : 2점<br>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선택 불가   |
|     | 자녀의 나이<br>(한부모 가족에 한함)      |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br>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br>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br>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4,824,128 | 5,675,364 | 5,675,364 | 5,914,918 | 6,222,418 | 6,529,919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8,162,399 |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기준 산정 시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본 아파트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 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허위임신·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 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1순위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 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 기간 초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 시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 그 외 수도권) → ③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 관리지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인천광역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
| 1순위 | <p>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li> <li>- 세대주이신 분</li> <li>-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분</li> </ul> |
| 2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li> </ul>   |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
| <p>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b>저축총액</b>(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br/>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p> |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해 당 사 항   |
|---|
| <p>-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b>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b>)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주택소유 여부는 “표. 신청기준의「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참조)</p> <p>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br/>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br/>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br/>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br/>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br/>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p> <p>※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p> |

## IV 신청 시 확인사항

###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 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신청자 본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 조회기준일 입력(2021.09.03) → 검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 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2.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주택 우선 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1.09.24)로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영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3. 거주 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4.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점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
|------|--|
| 신청자격 | <p>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br/>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br/>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br/>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
| 신청방법 | <p>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p> <p>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br/>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br/>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p>   |

###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예비 포함)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 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yj-thehue.com/>)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천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천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천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천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천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천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천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시책으로 예비입주자 비율이 상향 조정(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내 300%로 상향조정)되어 증가된 예비입주자로 인하여 사전서류접수 기간이 매우 혼잡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http://yj-thehue.com/>)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3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천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II. 신청기준’의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1.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 2021.09.13<br>(청약 Home : 08:00~17:30) | - 인터넷 청약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국민은행 가입자 포함)</li> <li>- PC : www.applyhome.co.kr /</li> <li>-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li> <li>•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건본주택 : 10:00~14:00)</li> </ul> |
|       | • 1순위                                   | 2021.09.14<br>(08:00~17:30)           | - 인터넷 청약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li> <li>•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대행은행 접수 가능(은행영업시간 내)</li> </ul>         |
| 일반공급  | • 2순위                                   | 2021.09.15<br>(08:00~17:30)           |            |  |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관련하여 각 은행별 영업시간이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영업시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접수 시 주민등록표(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 . 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특별공급신청자에 한함)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표6>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와 동일)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하여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VI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1. 인터넷 신청(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인증서는 은행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증권용 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신청시간 : 08:00 ~ 17:3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방문접수 (건본주택, 10:00~14:00) :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 건본주택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표>6의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목록상의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 일반공급 방문접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관련하여 각 은행별 영업시간이 상이함으로 개별적으로 영업시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건본주택 접수 불가)

### ■ 일반공급 접수(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접수) 시 구비사항

| 구 분                            |            | 구비사항  |
|--------------------------------|------------|---|
| 본인 신청 시                        |            | · 주택공급신청서(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br>·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br>-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br>- 청약자의 인감도장<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본인서명 확인 방식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및 분양 주체,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 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 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 지역 여부, 세대 구성원,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자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구 분            | 구비사항  |
|----------------|---|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br>※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 인터넷 사용 불가 시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 서류제출(예비입주자)                                  | 계약체결(당첨자)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
|---|--|--|--|--|
| 2021.09.24.(금) 08:00<br>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br>(www.applyhome.co.kr) | 2021.09.25.(토)~2021.10.03.(일)<br>10:00~16:00 | 2021.10.05.(화)~2021.10.13.(수)<br>10:00~16:00 | 2021.11.16.(화)~2021.11.20.(토)<br>10:00~16:00 | 추후 일정<br>당사 홈페이지 고지<br>(http://yj-thehue.com/)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영종하늘도시 한신더뷰2차」 건본주택(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      |  |  |  |  |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yj-thehue.com/)를 통해 추후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동·호수는 당사 홈페이지(http://yj-thehue.com/)에 게재 할 예정 입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건본주택 내 혼잡 및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의 300%를 대상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yj-thehue.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쏠 은행 청약자)   |
|--------------|------|---|
| 이용 기간        |      | 2021.09.24.(금) ~ 2021.10.03.(일)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br>-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 휴대폰<br>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1.09.2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 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2021.09.25.(토) ~ 10.03.(일) 일반공급예비입주자(2021.10.05.(화) ~ 10.13.(수)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집서 교환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br>(전체 포함)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li>•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ul> |
| ○    |             | ② 주민등록표 초본<br>(전체 포함)          | 본인           |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li> </ul>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④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⑤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 대상자          |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본인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서류<br>(기관추천<br>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br>(전체 포함)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li>•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주민등록표등본 제출</li> </ul>  |
|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br>(소득 및 자산 조회용) |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p>※ <b>건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b><br/>(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li> <li>•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li> <li>•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ul> |
|                        |      | ○           |   | ③ 주민등록표 초본<br>(전체 포함) | 본인  |
|                        |      | ○           |   | 배우자 및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

|               |   |                                    |                |  |
|---------------|---|------------------------------------|----------------|--|
|               |   |                                    | 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br>•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br>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 서류 | 대상자            |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 ○ | ⑥ 재직증명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⑦ 임신증명서류<br>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본인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br>•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 | ① 주민등록표 초본<br>(전체 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br>(또는 배우자)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br>•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br>•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④ 임신증명서류<br>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 ⑥ 임신증명<br>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확약(건본주택 비치)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br>(전체 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br>•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피부양<br>직계존속    |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   |   |                               |                 |   |
|--------------|---|---|-------------------------------|-----------------|---|
|              | ○ |   |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피부양<br>직계존속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br>•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br>※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br>(예비)배우자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br>•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 ③ 임신증명서류<br>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br>(예비)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br>(예비)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 | ⑤ 임신증명<br>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br>(예비)배우자   |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br>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건본주택 비치)  |
|              |   | ○ | ⑥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              |   | ○ | ⑦ 예비신혼부부 계약자 확인서              | 본인              |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br>※ 건본주택 비치  |
|              |   | ○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br>자 제공 동의서 | 예비배우자           |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건본주택 비치)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br>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분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피부양<br>직계존속     |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br>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   | ○ | ⑥ 소득세납부 입증서류<br>(아래 <표6> 참고)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자격<br>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br>② 건강보험공단        |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b>과거 1년 이내</b><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br><b>(과거 1년 이내)</b>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소득세납부<br>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br>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br>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br>세 납부자)<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br>② 해당직장<br>③ 해당직장/세무서 |

###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구분                    | 계약서류  |
|-----------------------|---|
| 본인<br>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현장수납 불가)  |
|                       |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③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본인 서명날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단,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가능)                                   |
|                       | ④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홈페이지(http://yj-thehue.com/) 게시 예정]<br>※ 자격 검증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
|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제3자<br>대리계약 시<br>추가서류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만 인정)   |

##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호수 배정의 추천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추가선택품목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인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계약 등의 사유 발생 시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지구 및 단지계획 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공통 | 일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li> <li>•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 공사)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함.</li> <li>• 본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li> <li>• 본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li> </ul>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li> <li>•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li> <li>•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용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커뮤니티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li> <li>• 본 사업장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li> <li>•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li> <li>•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li> <li>•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li> <li>•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 <li>•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신탁사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공개 후 당해 택지구 또는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부대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당해 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 또는 교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람.</li> <li>•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함.</li> <li>•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li> </ul> |
| 공용부<br>유의사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의 필로티 공간은 주동출입,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li> <li>•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 일부에 설치되는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음.</li> </ul>  |
| 기타<br>유의사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li> <li>•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li> </ul>  |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설비, 태양광설비,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등·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330대), 쓰레기 분리수거대(13개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미술장식품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이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103동, 105동, 106동, 108동, 110동, 112동 ○중계장치 설치 위치 : 옥상층-103동, 105동, 106동, 108동, 110동, 112동 / 지하1층 -헬룸2, 헬룸5, 헬룸9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하시기 바람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물건의 적치 등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단, 최하층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여야 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대지면적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 제외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
| 면적(m <sup>2</sup> ) | 62,372.6000 | -    | 15.59% | 149.95% |

- 상기 부지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면적은 각각 별도로 분할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본 단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임.
- 일부 부대시설 및 계절창고등은 일부 기간 AS사무실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홍보물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본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 현황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당해 지구 내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주변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 시 모형 및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사업부지 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전면공지, 완충녹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



|    |         |  |
|----|---------|--|
|    |         | <p>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지구 내 인근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공공지 등 주변 공공시설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주변 현황으로 북서측방향은 40m 도로, 북동측은 하늘초등학교, 남동측은 공동주택용지(A42BL), 공원, 남측방향으로 도시공원이 위치함.</li> <li>• 본 사업부지의 현황 등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으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li> <li>• 사업부지 경계부는 인접대지 등과 바닥레벨에 차이가 있어 옹벽 및 조경석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옹벽의 형태, 마감, 구간,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사업부지 경계부 옹벽계획은 인접 사업지 및 기반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실시공사 옹벽의 종류, 디자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사업부지 남측으로 연결되는 보행로가 105동 인근 대지경계부에 설치 예정이며 설치 위치와 형상등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li> <li>• 사업부지 북서측 40m 도로 경계부에 높이 4m 방음벽이 설치되며, 경계부 레벨 및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당해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li> <li>•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미 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를 득한 배치의 주출입구를 제외한 단지외부로 연결되는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인접한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li> <li>• 사업지 주변의 주유소, 요양병원 및 기타 주변 (혐오)시설 위치,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철탑위 위치 및 현황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li> <li>• 단지 북측의 부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좌회전 진·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북측의 하늘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분진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 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생은 인천하늘초, 중학생은 9학교군(인천중산중, 인천하늘중, 영종중, 신설(가칭)하늘1중)내 분산배치 가능하고, 신설학교의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영종하늘도시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추후 반드시 재협의를 필요하고 재 협의 시 동 요건 및 주변여건 변화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수 있습니다.</li> <li>• 학교 및 학교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사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li> </ul>  |
| 단지 | 동별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에 인접 설치되는 각종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근접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li> <li>• 단지 내 일부 주동 옥상 파라펫, 옥탑구조물 및 측벽에는 상향 투광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상세 위치는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단지 내 주동 옥상(전동)에 설치되며 태양광설비의 내용 및 위치는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101동 1호 라인 필로티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됩니다.</li> <li>• 101동 정면부 피트층에 크린넷이 설치됩니다.</li> <li>• 101동 정면부 피트층에 경로당, 용역휴게실이 설치됩니다.</li> <li>• 101동 우측면부에 단지 주출입구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101동 후면부에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쓰레기분리보관소, 24H 멀티라운지(키즈스테이션), 통학버스 대기 및 승하차 공간이 설치됩니다.</li> <li>• 101동 후면부에 지하주차장 진입램프와 비상차로가 설치되므로 차량 진출입 및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102동 5호 라인 필로티에는 자전거 거치대 및 휴게마당이 설치됩니다.</li> <li>• 102동 정면부에 도시공원이 위치합니다.</li> </ul>  |

- 102동 후면부에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2동 후면부에 옥외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됩니다.
- 103동 4호 라인 필로티에는 자전거 거치대 및 휴게마당이 설치됩니다.
- 103동 정면부에 도시공원이 위치합니다.
- 103동 후면부에 크린넷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3동 84C와 84C1의 발코니1은 층별로 위치가 다르오니 모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 4호 라인 필로티에는 자전거 거치대 및 휴게마당이 설치됩니다.
- 104동 정면부에 도시공원이 위치합니다.
- 104동 좌측면부에는 계단, 카페테리아 및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 우측면부에 크린넷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4동 84C와 84C1의 발코니1은 층별로 위치가 다르오니 모형에서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2호 라인 필로티에는 자전거 거치대 및 휴게마당이 설치됩니다.
- 105동 정면에 연결녹지가 위치합니다.
- 105동 우측면부에는 계단, 카페테리아 및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후면부에 크린넷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5동 후면부에 옥외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됩니다.
- 106동 정면부에 크린넷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6동 후면부에 크린넷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6동 후면부에 옥외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됩니다.
- 107동 정면부에 크린넷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7동 우측면에 방과후교실 및 실내놀이터가 설치됩니다.
- 107동 후면부에 크린넷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7동 후면부에 옥외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됩니다.
- 108동 정면부에 크린넷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8동 우측면에 계단, 어린이집, 크린넷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8동 후면부에 크린넷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8동 후면부에 옥외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됩니다.
- 109동 정면부에 크린넷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9동 1호 라인 필로티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됩니다.
- 109동 우측면에 경비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와 비상차로가 설치되므로 차량 진출입 및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9동 우측면에 하늘초등학교 보강토옹벽이 보일 수 있으며 해당 옹벽은 당 사업과는 무관한 시설물입니다.
- 109동 후면부에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 109동 후면부에 쓰레기 분리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109동 후면부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 110동 1호 라인 필로티에는 자전거거치대 및 휴게마당이 설치됩니다.
- 110동 1층 기준 레벨은 +23.30입니다.
- 110동 전면부 피트층에 관리사무소가 설치됩니다.
- 110동 전면부 방과후교실 및 실내놀이터가 설치됩니다.
- 110동 후면부 크린넷(EL+23.30) 및 쓰레기 분리보관소(EL+18.30)가 설치됩니다.
- 110동 후면부에 계단, 어린이집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불빛 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동 옥탑지붕에 TV 공청안테나가 설치됩니다.</li> <li>• 111동 1호, 2호, 3호 라인 필로티에는 자전거거치대 및 휴게마당이 설치됩니다.</li> <li>• 111동 1층 기준 레벨은 +18.30입니다.</li> <li>• 111동 2층 1호 라인 필로티가 설치됩니다.</li> <li>• 111동 후면부 1층에 방과후교실 및 실내놀이터가 설치됩니다.</li> <li>• 112동 1층 1호, 2호, 3호 라인 필로티에 자전거 거치대 및 휴게마당, 맘스카페 화장실이 설치됩니다.</li> <li>• 112동 1층 기준 레벨은 +18.30입니다.</li> <li>• 112동 2층 1호 라인에 필로티가 설치됩니다.</li> <li>• 112동 전면부 1층에 맘스카페가 설치됩니다.</li> <li>• 112동 우측면에 경로당 및 용역휴게실이 설치됩니다.</li> </ul>   |
| <p>단지계획<br/>(설계,<br/>디자인,<br/>마감)</p> | <p>■ 단지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상 14~22층 규모임.</li> <li>• 지붕은 평지붕으로, 전체 지붕층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에 옥탑부 장식 구조물 및 경관조명이 설치됨.</li> <li>•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됨.</li> <li>•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li> <li>• 본 아파트는 판상 및 타워형 주동타입으로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li> <li>•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li> <li>• 단지 모형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예정위치는 설치심의 신청 예정 위치를 표기한 것으로 배치도/시설물설치계획도 등에 표기된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li> <li>• 미술장식품의 위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는 심의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차량주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배치 구조 및 층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사침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지상층 주동 진입은 동별 필로티 또는 통합로비를 이용해 진입하는 구조이며, 주동 위치에 따라 진입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람.</li> <li>• 필로티 천장고는 2.4M로 계획되어 있으나(일부동 2.7m), 실시설계시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li> <li>• 필로티 구조상 외기에 직접면하는 구조로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li> <li>•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1층 도로는 소방 및 비상차 전용도로이며,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가 아님,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차 전용도로가 추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지붕층에 주방 배기용 공용 루프팬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및 냄새등의 영향을 받을수 있음</li> </ul> <p>■ 외관, 조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의 BI, CI 및 각종 브랜드 로고 표기는 일부 주동 상단부 벽부 또는 최상층 위 파라펫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상세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필로티(내외부) 등은 분양이후 세부디자인 완료시 확정되며,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본 단지의 주동 주출입구 게이트 디자인은 위치에 따라 석재 돌출치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게이트의 위치가 바뀔 수 있음.</li> <li>• 출입구 디자인 벽체 및 데크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리침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본 단지의 주동 저층 외벽부 마감은 3개층은 석재 및 일부 수성페인트 혼합, 4층 이상은 수성페인트 마감이 기본 마감으로 시공됨.</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 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li> <li>• 본 단지 일부 옥상/옥탑부/축벽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상세 계획은 미정으로, 실시공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li> <li>• 분양홍보자료(모형, CG등)에 표현된 옥탑 디자인 구조물의 규격, 기둥의 위치/크기, 간살 등의 규격 등은 이해를 돕기위한 대략적인 표현으로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에 따라 세부규격이 결정되므로, 분양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등 및 기타 조명으로 의하여 야간에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ul>   |
| 공용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지하층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매연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시공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li> <li>• 단지내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일부구간 적용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li> <li>•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단지 내 보도,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기계/전기/발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보관소, 크린넷,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 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센터, GX, 실내골프연습장),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아파트와 판매/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주출입구 및 차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자, 방문객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li> <li>•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엘리베이터의 구조물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여야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단지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보행로 및 차로 바닥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li> <li>• 본 아파트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으로 미술장식품 심의 시 위치가 결정되며, 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권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ul> |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각층 1개소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되고, 계단실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최하층, 최상층, 3개층마다 1개소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되며,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됨.</li> <li>• 각동 지하 피트 내부에는 배수처리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펌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li> <li>• 각 주동 세대별 동체감지시스템은 1,2층, 최상층의 외부 창호 전체,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li> <li>•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무인택배시스템이 1개동 당 1개소씩 지하층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세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주동 출입구의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이 있는 자동문 슬라이딩&amp;스윙도어 및 픽스도어는 안전유리가 적용됨.</li> <li>• 지붕층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각도 및 설치 면적, 장비의 구성 등 세부사항은 태양광설비의 최대 전력생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실시공시 도면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지붕층 및 옥탑등에 설치되는 경관조명 및 옥상구조물은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경관조명 작동 및 운영, 유지보수 등 관련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영종지구는 단지내 자동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입주 시 자동 크린넷이 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자동크린넷을 통하여 쓰레기 수거 시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인접 세대는 미관저해,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자동크린넷을 수거하는 쓰레기의 종류는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이며, 자동크린넷으로 수거하지 않는 불연 및 재활용쓰레기 등은 기존의 수거 방식으로 배출하셔야 합니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크린넷은 각 위치별 쓰레기투입구 용량 및 관경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동별 쓰레기량을 감안하여 계획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li> <li>• 자동크린넷을 통해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투입구에 음식물이 흐르거나 고여 냄새 및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및 미관상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습니다.</li> <li>• 쓰레기집적소 및 자동크린넷은 실시공시 위치 및 사이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li> </ul>  |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도로, 주차, 외부연결</li> <li>• 단지 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선큰 등이 일부 동의 인근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가 설치되며, 평상시 이용에 제한이 있음.</li> <li>•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이며, 지하1층 주차장으로 직진입하는 구조로 출입구 유효높이는 2.7M이상이며, 차로폭은 6M이상으로 설치될 예정임.</li> <li>• 단지 출입구는 단지 동측 101동 북측면에 주출입구 1개소와 단지 북측 109동 후면에 부출입구 1개소가 설치됨</li> <li>• 단지내외 도로(지상/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li> <li>•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단지모형, 배치CG등에는 비상차량의 정차위치(소방차부서공간)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실시공시 설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람.</li> <li>•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함.</li> <li>•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배치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멀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구획의 최소 높이는 2.1M이므로,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개조한 차량의 높이가 주차구획 최소높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파손등의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설비 설치예정임(총 11대)</li> </ul>  |
| 부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li> <li>- 근린생활시설</li> <li>•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지붕은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 장비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에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음.</li> <li>•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계획은 아파트와 공동으로 주차장 출입구 및 통로 등을 사용하여야 구조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주민공동시설</li> <li>• 단지 동측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경비실 및 문주가 통합형으로 설치됨.</li> <li>• 각동 지하층에 계절창고가 설치됨.</li> <li>• 101동 피트층에 경로당 및 용역원휴게실이 설치되며, 별도의 가구 및 집기류는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li> <li>• 104동 좌측면부에 게스트하우스 및 카페테리아가 설치되며, 별도의 가구 및 집기류는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li> <li>• 104동 지하층에 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됨</li> <li>• 110동 하부 피트층에 관리사무소(MDF, 방재실 포함), 별도의 가구 및 집기류는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li> <li>• 110동 인근 지하층에 어린이승합차 대기공간이 설치됨</li> <li>• 110동 인근 지하층에 재활용품보관소가 설치됨</li> <li>• 어린이집(110동 후면), 경로당(101동 하부층)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이 설치되지 않음.</li> <li>• 110동과 111동 사이 하부층에 방과후 교실, 실내놀이터, 아카데미, 놀이데크, 멀티룸이 설치되며 별도의 가구 및 집기류는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li> <li>• 112동 하부층 전면부에 작은도서관, 독서실, 스테디룸, 유아도서관, 오피스, 맘스카페가 설치되며, 후면부에 휘트니스, GX, 골프연습장이 설치되며</li> </ul> |

|                  |    |   |
|------------------|----|---|
|                  |    | <p>별도의 가구 및 집기류는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은 실시공시 분양 홍보물에 표현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 지하층에는 동당 1개소 기준으로 주차장에서 진입가능한 계절창고가 설치될 예정이며, 계절창고의 설치 위치는 위치별로 상이하며 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부대시설 내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함.</li> <li>•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li> <li>•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li> <li>•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li> <li>• 단지내 지상 +23.30(외부공간)~지상 +18.30(외부공간) 이동이 가능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101동과 112동 사이와 110동과 어린이집 사이에 설치되며, 지상 +18.30(외부공간)~지상 +13.00으로 연결되는 외부계단은 104동과 105동 사이에 설치됩니다.</li> <li>• 단지내 지상 +23.30(외부공간, 부대시설 지붕)~지상 +18.30(외부공간) 이동이 가능한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111동과 112동 사이입니다.</li> <li>• 단지내 지상 +18.30(외부공간)~지상 +14.00(유동레벨) 이동이 가능한 외부계단은 106동 후면과 107동 전면 사이에 설치됩니다.</li> </ul> <p><b>- 지상.지하주차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대수는 총 1,113대 설치되며, 공동주택 1,105대(세대당1.27대) 근린생활시설 주차 8대(지상1층)로 계획되어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입구 및 차로 등을 아파트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별도의 출입구 및 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아파트 출입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li> <li>•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이용 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li> <li>• 지하층에 설치되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의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진동, 매연 등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li> <li>•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p><b>- 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li> <li>•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li> <li>• 도면에 표기된 수경시설은 분수대는 바닥분수로 설치되며,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깊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대지 경계에는 레벨차이에 의해 보강토옹벽, 굴조 옹벽 또는 조경석 등이 설치되며,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ul> |
| 단<br>위<br>세<br>대 | 평면 | <p>■ 단위세대 및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li> </ul>   |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기본형(비확장형), 확장형의 상호 사양은 발코니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상부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준층보다 천장고가 낮아지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측면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인접세대에 면한 발코니 벽부에 측면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확장 선택시보다 발코니 실사용면적이 작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상호 하부에 골조턱 설치로 인하여 발코니 출입이 불가한 창호가 설치되는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에는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구성이 상이하여 다소 협소하며, 제품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등), 유선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세대내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확장형 선택시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내 발코니는 실시공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홍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74A, 74C, 84A, 84B, 84C, 84D형에서 침실2, 침실3의 침실 통합형 옵션선택시 벽두께의 차이로 인한 돌출부 마감을 위해 침실3 길이가 침실2 길이만큼 축소됨.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함.
- 본 공사 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의 층고는 1층 3.1M, 기준층 2.8M이며, 천장고는 1층 2.5M(우물천장 2.6M), 기준층 이상은 천장고 2.3M(우물천장 2.4M)로 동일함.
- 1층 및 기준층의 욕실 천장고는 동일함.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 평면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안목/치수**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음.

석재/타일

- 본 공사 시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 및 주방벽체 유상옵션)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음.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벽, 욕실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창호**

- 세대의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창호분할의 위치 및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 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도어 열림방향은 수납선반설치 위치 및 이용자 동선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도면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안방 분합문 커텐박스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세대의 위아래 인접세대의 확장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하여 커텐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고, 이는 공동주택 성능을 위한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계약하여야 함.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1층 및 기준층 세대의 창호 크기는 동일함.

■ **전기/설비**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세대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 공사 시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는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타입 침실 벽체 1개소에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노출 설치되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 타입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이 설치되는 벽체가 경량벽체인 경우 설비설치를 위하여 벽체 두께가 조정될 수 있고, 골조벽으로 변경시공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됨.(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제외됨.)
- 주방 상부장은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되며, 후드장 주변 천장으로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됨.

■ **욕실**

- 욕실 내부의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단높이가 부위별로 차이가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옵션/선택품목**

- 유상옵션품목 및 선택옵션품목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함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각 평형별 유,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공사,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하이브리드쿡탑, 현관중문 및 기타 인테리어 유상옵션 등은 별도 유상옵션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발코니

- 본 공사 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실외기실은 화재 시 인접 세대로의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시설이 통합으로 설치된 구조로 출입문은 철재문이 설치되며, 비난방공간이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가 아님.
- 각 동 최하층 세대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필로티 상부세대의 경우 비상시 완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여야 함.
- 각 세대 실외기실 내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층별로 상이합니다.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위층, 아래층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부주의에 의한 피난구 개방 시 아래층 세대에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공간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미확장시에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우오수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발코니 바닥 레벨은 해당 부위의 용도에 따라 동일 발코니 내에서 단높이가 상이하게 설치되며, 이는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li> <li>• 확장형 단위세대의 발코니중 비확장 발코니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결로방지단열재 T23로 설치될 예정으로 모델하우스 내 견본주택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후 해당 발코니의 실사용면적은 모델하우스보다 단열재 두께만큼 줄어들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청약, 계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ul>   |
|  | 가구 및 마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li> <li>• 세대 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가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불박이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 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입주자의 개별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li> <li>•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li> </ul>  |
|  | 기타       | <p>■ 세대/규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li> </ul> <p>▣ 내진능력 : 본 건물은 건축구조설계기준 (KDS411700)에 따라 내진능력(수정메디컬 진도 등급, MMI)Ⅶ로 설계되었음</p>   |
|  | 견본주택     | <p>■ 견본주택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은 74A ,84A 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은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확장기본형(유상옵션 미포함)의 경우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고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처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품목, 견본주택 연출용 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침대, 소파, 책상, 의자, 식탁, 커튼, 액자, 조명,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및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TV,세탁기 등),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li> <li>•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 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li> <li>•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미확장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li> <li>•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신발장 하부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li> <li>•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천장 환기구, 화장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온수분배기,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설치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단지모형, 커뮤니티시설 및 단위세대 이미지 등 포함),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등의 이미지,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사실(학교, 도로명,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식탁, 책상, 의자, 가전, 소파, 거실장 등의 이동식 가구, 보조조명, 액자 및 소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li> <li>•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내부 및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요소들이 모두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li> <li>•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현관,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 도어(추가선택품목)등은 본 공사 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배선기구,월패드,콘센트,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 환기조절기,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li> </ul> <p>■ 제공/전시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의자, 식탁세트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TV, 세탁기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됨.</li> </ul> |
| 사이버모델하우스 | <p>■ 사이버모델하우스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li> <li>•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li> <li>•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li> </ul>   |

- 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형 품목,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 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선홍통,온도조절기,콘센트,환기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4.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 적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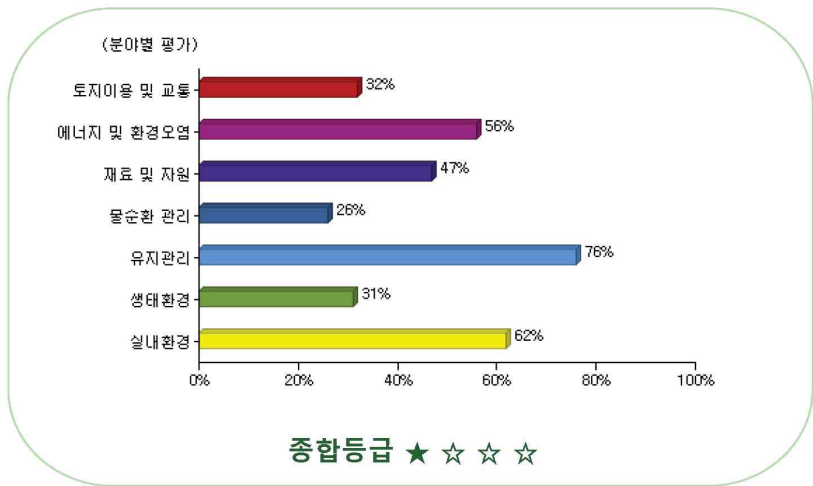
| 구분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3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기준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3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 용  | -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 용  |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마목)                | 적 용  |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 용  |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관련법(수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 용  | - 세대 내에는 각 실별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br>(제7조제3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 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 용  |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개요                            | 인증 개요  |
|-----------------------------------|--|
| 건축물명 : 인천영종 A40BL 공공주택건설사업        | 인증번호 : 2021-171  |
| 건축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
| 공공(예정)일 : 2023.12.31              | 유효기간 : 2021.05.21. ~ 사용승인일과<br>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산날   |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0-2대         |  |
| 층수 : 지상22층, 지하1층                  |  |
| 연면적 : 134,316.7748 m <sup>2</sup> |  |
|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  |
| 설계자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
|                                   | <b>인증 등급</b>   |
|                                   |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
|                                   |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br>(국도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br>환경부고시 제2019-248호,<br>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5월 21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 인천영종 A40BL 공공주택건설사업
- 신청자 : 한신공영(주)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0-2대
-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 |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내구성        | ★    |
| 2. 가변성        | ★★   |
| 3. 수리용이성 권용부분 |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    |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    |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5. 에너지 성능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    |
| 7. 신·개량에너지 이용             | -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 9. 기존층 보화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    |
| 10. 환경성선안 제품(BPPD)의 사용    | ★★   |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   |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 16. 빗물관리                  | -    |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    |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7. 연계된 녹지축 조성           | -    |
| 18. 가연지반 녹지율             | ★    |
| 19. 생태면적률                | ★★   |
| 20. 비옴 조성                | -    |
|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22. 자연 환기성능 확보           | -    |
| 2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24. 자동차도조일장차 설치 수준       | ★★   |

라. 생활 환경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4. 생활권리시설의 접근성            | ★★   |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6. 운임·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13. 홈네트워킹 종합시스템           | ★★★  |
| 14. 방범안전 콘텐츠              | ★★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감지 및 경보설비    | ★★   |
| 2. 제연설비         | ★    |
| 3. 내화성능         | ★    |
| 4. 수평피난거리       | ★★★  |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    |
| 6. 피난설비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5월 21일

한국부동산원장



###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천원]

| 구 분         |           | 항 목          |            | 금 액        |
|-------------|-----------|--------------|------------|------------|
| 택<br>지<br>비 |           | 택지공급가격       |            | 98,259,769 |
|             |           | 기간이자         |            | 2,142,324  |
|             |           | 필요적 경비       |            | 92,337     |
|             |           | 그밖의비용        |            | 5,117,308  |
| 건<br>축<br>비 | 토<br>목    | 토공사          |            | 2,871,920  |
|             |           | 흙막이 공사       |            | -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
|             |           | 옹벽공사         |            | -          |
|             |           | 석축공사         |            | 54,592     |
|             |           | 우수·오수공사      |            | 817,902    |
|             |           | 공동구공사        |            | -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          |
|             |           | 도로포장공사       |            | 885,303    |
|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          |
|             |           | 정화조시설공사      |            | -          |
|             |           | 조경공사         |            | 6,517,219  |
|             |           | 부대시설공사       |            | 221,233    |
|             |           | 공통가설공사       |            | 4,750,724  |
|             |           | 가시시설물공사      |            | 3,319,730  |
|             |           | 지정 및 기초공사    |            | 7,199,072  |
|             | 철골공사      |              | -          |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41,102,488 |            |
|             | 용접공사      |              | -          |            |
|             | 조적공사      |              | 1,127,472  |            |
|             | 미장공사      |              | 4,881,613  |            |
|             | 단열공사      |              | 905,696    |            |
|             | 방수·방습공사   |              | 2,070,088  |            |
|             | 목공사       |              | 6,610,097  |            |
|             | 가구공사      |              | 2,355,062  |            |
|             | 금속공사      |              | 1,329,143  |            |
|             | 지붕 및 환통공사 |              | 1,200,884  |            |
|             | 창호공사      |              | 7,065,874  |            |
|             | 유리공사      |              | 1,083,153  |            |
|             | 타일공사      |              | 4,457,529  |            |
|             | 돌공사       |              | 571,615    |            |
|             | 도장공사      |              | 1,189,142  |            |
|             | 도배공사      |              | 1,332,802  |            |
|             | 수장공사      |              | 2,984,673  |            |
|             | 주방용구공사    |              | 8,657,628  |            |
|             | 그 밖의 건축공사 |              | 505,268    |            |
| 기계          |           | 급수설비공사       | 1,380,483  |            |
|             |           | 급탕설비공사       | 1,354,367  |            |

|              |           |         |             |            |
|--------------|-----------|---------|-------------|------------|
|              |           |         | 오수·배수설비공사   | 2,268,470  |
|              |           |         | 위생기구설비공사    | 3,544,484  |
|              |           |         | 난방설비공사      | 3,283,312  |
|              |           |         | 가스설비공사      | 895,449    |
|              |           |         | 자동제어설비공사    | 310,920    |
|              |           |         | 특수설비공사      | 3,008,459  |
|              |           |         | 공조설비공사      | -          |
|              |           | 그밖의공종   | 전기설비공사      | 10,606,532 |
|              |           |         | 정보통신공사      | 3,167,397  |
|              |           |         | 소방설비공사      | 7,631,240  |
|              |           |         | 승강기공사       | 3,636,709  |
|              |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5,090,983  |
|              |           |         | 이윤          | 2,181,851  |
|              |           | 간접비     | 설계비         | 4,223,107  |
|              |           |         | 감리비         | 6,696,499  |
|              |           |         | 일반분양시설경비    | 1,229,337  |
|              |           |         | 분담금 및 부담금   | 381,415    |
| 보상비          | -         |         |             |            |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 1,124,470 |         |             |            |
| 그밖의 비용       |           |         | 24,310,855  |            |
| 합계           |           |         | 308,006,000 |            |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 감정평가금액(산출평균액) | 가. (주)대한감정평가법인 | 나. 삼일감정평가법인(주) |
|---------------|----------------|----------------|
| 105,097,831   | 103,538,516    | 106,657,146    |

6.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택지비 가산비   |           |         |          |                        |           | 건축비 가산비         |              |             |           |           |           |              |                |                  |            |            |            |
|-----------|-----------|---------|----------|------------------------|-----------|-----------------|--------------|-------------|-----------|-----------|-----------|--------------|----------------|------------------|------------|------------|------------|
| 택지비 기간이자  | 말뚝박기 공사비  | 흙막이 공사비 | 방음시설 설치비 | 기타증빙 가능한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 소계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 | 초과복리 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           |           |           | 친환경 주택건설 가산비 | 지하주차장 증고증가 공사비 |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가산비 |            | 사업승인조건 공사비 | 소계         |
|           |           |         |          |                        |           | 공동주택성 능등급       |              | 홈 네트워크      | 에어콘 냉매배관  | 기계환기 설비   | 쓰레기 이송설비  |              |                | 건강친화형 주택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            |
| 2,291,411 | 4,147,610 | 839,686 | 486,135  | 98,762                 | 7,863,604 | 3,129,926       | 3,922,550    | 7,539,638   | 1,549,269 | 3,763,898 | 1,464,359 | 842,856      | 557,347        | 1,145,279        | 48,248     | 2,039,320  | 26,002,689 |

## 7.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단위: 원, VAT포함]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7,162,520,000원)   |
|-------|---|--|---------------|---|
| A40BL | 한국토지주택공사 (131-82-13727)<br>한신공영(주) (114-81-04605)<br>우미건설(주) (409-81-31276)<br>이수건설(주) (206-81-40254)<br>㈜우석건설 (307-81-06689) | 한신공영(주) (114-81-04605)<br>우미건설(주) (409-81-31276)<br>이수건설(주) (206-81-40254)<br>㈜우석건설 (307-81-06689)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24-81-52860)<br>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301-81-31079)<br>(주)바탕건축사사무소 (215-87-87916)<br>(주)진전기엔지니어링 (120-81-60091)<br>(주)건창이엔이 (542-86-01429)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8.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2차 견본주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li> <li>※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운영기간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합니다.</li> <li>■ 운영시간 : 10:00~18:00</li> </ul> |
| 홈페이지  | 분양문의   |
| <a href="http://yj-thehue.com/">http://yj-thehue.com/</a> | 1855-0870  |